힘내라 대한민국

식품의약품안전처

보도자료

배 포	2020. 8. 14.(금)
담 당 과	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
과 장	안영진 (☎043-719-2808) 박창원 (☎043-719-5201)
사 무 관	임상우 (☎043-719-2801) 김영훈 (☎043-719-5202)

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**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**을 8월 14일(금)부터 9월 23일(수)까지 **입법예고**한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**국제연합**(UN)에서 **마약류·원료물질로 지정**한 **물질**과 **임시마약류** 중 **의존성이 확인**된 **물질**을 **마약류·원료물질**로 **추가 지정**하고, **마약류취급자**의 **의무교육 이수 기간**을 **합리적**으로 **개선**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.

* 원료물질 :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

* 임시마약류 :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·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

□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≪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≫

○ **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원료물질 추가 지정**(안 별표 2, 3, 4, 6 및 8)

- **(마약)**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'크로토닐펜타닐'과 '발레릴펜타닐'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'펜타닐 유사체'가 추가됩니다.

OPEN 공공누리
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- **(향정신성의약품)**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'3시-이', '메트암네타민', '티-비오시-3,4-엠디엠에이', '프로린탄',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'레미마졸람' 등 총 5종이 추가됩니다

- **(원료물질)**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'엠에이피에이'가 추가됩니다.

≪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≫

○ **마약류관리자 지정**에 **필요**한 **서류**를 **'행정정보 공동이용'**으로 **확인** (안 제10조, 별지 제5호서식)

-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'약사 면허증 사본'을 제출해야 하나,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'행정정보 공동이용'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이 생략됩니다.

○ **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**(안 제47조제2항)

- 교육 이수 기간을 **마약류취급자 '허가(지정) 후 1년 이내'**에서 **'허가(지정) 전·후 1년 이내'**로 **확대**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**마약류**가 **오남용**되거나 **불법 유통**되지 않도록 **신속히 관련 법령 등**을 **정비**하는 한편, **불필요한 절차적 규제** 등을 **개선**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